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의회 소속 지방의정연수원 설치 등〉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41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9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7.
3. 회부연월일 :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그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방의정연수가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가로막혀 경기도의회 직속기관으로 의정연수원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강의·연구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의회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 등을 담당하는 지방의정연수원을 시·도의회 직속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강의·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4조의2(지방의정연수원의 설치) ① 지방의회의원과 제102조제3항의 사무직원 교육 및 연수 등을 위하여 시·도의회에 지방의정연수원을 둔다. ② 지방의정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지방의정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04조의3(교수요원) ① 지방의정연수원에는 강의·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였으며, 사무직원의 교육·훈련·복무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또한, 지방의회에게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²⁾.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자 연혁>

근거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관련 사항
지방자치법 (1949. 8. 15.)	의장이 임명
지방자치법 (1988. 5. 1.)	의장과 협의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지방자치법 (1994. 3. 16.)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지방자치법 (2006. 4. 28.)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지방자치법 (2007. 5. 11.)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지방자치법 (2022. 1. 13.)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지방의회 직속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은 ① 국회 의정연수원³⁾, 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⁴⁾, ③ 시·도지

1)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⁵⁾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의회 대상 교육일정>

연수과정			구분	일정	인원	기간
지방 의원	의원과정		대면	1월, 9월	각 50명	3일
			온라인	7월	100명	3일
	특화형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대면	4월	40명	2일
			온라인	1월	100명	2일
		예결산	대면	4월	50명	2일
			온라인	10월	100명	2일
		행정사무 감사	온라인	1월, 10월	각 100명	2일

3) 「국회사무처 직제」(국회규칙)

제12조(의정연수원) ① 의정연수원에 원장 1인과 교수 2인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수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연구개발
3.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4. 시민의정연수
5. 고성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정연수원에 두는 과) ④ 의정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지방의회연수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조(직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시·도회의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 해당 시·도회의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연수과정			구분	일정	인원	기간
의회 직원	전문위원과정		대면	5월	50명	3일
			온라인	2월	200명	3일
	정책지원관과정		대면	1월	70명	3일
			온라인	5월	100명	3일
	실무직원과정		대면	3월	70명	3일
			온라인	10월	100명	3일
	속기실무직원과정		대면	2월	50명	3일
				7월	70명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조례안	대면	1,7월	각 70명	2일
			온라인	4월	100명	2일
		예결산	대면	3,7월	각 70명	2일
			온라인	4,10월	100명	2일
		행정사무 감사 회의운영	대면	1,3월	각 70명	2일
			온라인	5,10월	100명	2일
	심층실습과 정	조례안	대면	3월	39명	5일
		예산안	대면	9월	50명	5일
		결산	대면	4월	39명	5일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		대면	협의	-	3일

※자료: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연수 연수일정

<2024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정연수센터 지방의회 대상 교육일정>

연수과정		일정	인원	기간
지방 의원	찾아가는 직무교육	2, 5, 8, 10월	각 40명	2일
	행정사무감사 심화과정	4월	각 40명	2일
	예·결산심사 심화과정	8월	각 40명	2일
	현장·이슈정책 교육과정	7, 9월	각 40명	2일
의회 직원	신규·전입자 입문과정	2, 3, 7, 8월	각 40명	4일
	직무 전문과정	4, 5, 9, 10월	각 40명	4일
	정책지원관 실무과정	1, 2, 3, 4, 7, 8월	각 40명	5일
	지방의회 인사 실무과정	5. 9월월	각 60명	2일

※자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정연수 교육운영계획

<2024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지방의회 직원대상 교육일정>

연수과정		일정	인원	기간
의회 직원	발전적인 의회 협력 이해	3월	20명	2일
		9월	20명	2일

※자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일정

참고로, 경기도⁶⁾의 경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및 직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소속 의정연수원 설립을 논의하고 있음.

개정안은 시·도의회가 직속으로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도록 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의회 소속직원 등에 대한 교육체계를 개선하며, 보다 편리한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시·도의회별로 지방의정연수원을 두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수요가 충분한지 여부⁷⁾, 현재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별 시·도지사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이루

6)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경기도의회, 2024.9.)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의 60.9%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이유는 ‘경기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연수체계 구축’(32.1%), ‘다양하고 집중적인 연수기회 제공’(20.9%), ‘경기도 내 의회 간 협력강화’(18.8%) 순으로 나타남.

7) 참고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광역의회 872명, 기초의회 2,988명이며, 직원 정수는 광역의회 2,658명, 기초의회 5,940명이며, 국회의정연수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4천여명의 교육이 가능함.

어지는 교육과정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도지사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⁸⁾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의회 교육수요를 감안할 때, 현행 교육기관의 교육으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

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